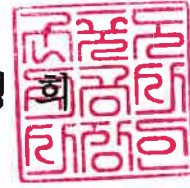


「군포도시공사 고객모니터단 운영」 시행내규 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2년 3월 30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67 호

## 군포도시공사 고객모니터단 운영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군포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의 시민참여 경영 체제 확립과 시민만족 경영활동 전개를 위한 고객모니터단(이하 “모니터단”이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역할수행)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공사 각 사업장의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
2. 공사 사업 프로그램 발굴, 고객서비스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모니터단의 위촉위원은 사업 부서별로 총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모니터단 위촉위원은 각계각층의 시민 및 전문가 중에 사장이 위촉한다.

③ 모니터단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운영) ① 사업부서별 부서장은 각 모니터단을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 하며, 사고가 있을 시에는 부서장이 미리 지명한 담당자가 그 직무를

대행한다.

②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5조(수당지급) 모니터단 회의 개최 시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세칙) 이 내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 전 고객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소 관 부 서		미 래 기 획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미 래 기 획 부 장 박 인 희
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호 선 (390-7644)